

부속서 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한국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정부수준**¹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¹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다. **관련의무**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1항가호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제1항가호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대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그리고

마. **조치**²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제 1 항 및 제 10.8 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제 1 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1항가호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1항다호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11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6조(이행요건 금지)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11조(현지주재)와 제8.4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11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	건설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한국에서 건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7453호, 2020. 6.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7359호, 2020. 6. 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7378호, 2020. 6.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 1)(대통령령 제30237호, 2019. 12.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20. 1. 15.)

2	분야	: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임대, 정비, 수리, 판매 및 처분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임대, 정비, 수리, 판매 및 처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대통령령 제 30798 호, 2020. 6. 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 조부터 제 63 조까지, 제 65 조의 2 및 제 65 조의 3(국토교통부령 제 745 호, 2020. 7. 1.)

3	분야	: 운송 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처분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 정비, 수리 및 처분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수리시설” 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발급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 20 조, 제 44 조, 제 45 조 및 제 53 조(법률 제 17235 호, 2020. 4.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8 조, 제 83 조, 제 87 조 및 제 111 조(국토교통부령 제 744 호, 2020. 6. 2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 16 조(국토교통부령 제 749 호, 2020.7.22., 환경부령 제 878 호, 2020. 7. 22.)

4	분야	: 유통 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담배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가 되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조치	: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7142호, 2020. 3.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96호, 2020. 6. 24)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0392호, 2020. 2. 11)

		국세청 고시 제2020-17호(2020. 7. 1.) 및 제2019-11호 (2019. 4. 4.)
--	--	--

5	분야	:	농축산업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또는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p>
	조치	:	<p>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6859 호, 2019. 12. 31.)</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30586 호, 2020. 3. 31.)</p> <p>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37 호, 2018. 7. 6.)</p>

6	분야	:	사업 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한 인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 인은 1 개의 사무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법률 제 17211 호, 2020. 4.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보건복지부령 제 672 호, 2019. 9. 27.)

7	분야	: 도매·소매 유통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p>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p> <p>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p> <p>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p> <p>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 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化妆품을 포함한다) 공급 서비스</p> <p>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p> <p>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은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중고차 도매 또는 소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조치</p>	<p>: 약사법 제 42 조 및 제 45 조(법률 제 17208 호, 2020. 4. 7.)</p> <p>약사법 시행령 제 31 조의 2(대통령령 제 30545 호, 2020. 3. 24.)</p> <p>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6 조(대통령령 제 24479 호, 2013. 3. 23.)</p> <p>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 4 조 및 제 12 조(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0 호, 2015. 12. 9.)</p> <p>의료기기법 제 15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p> <p>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 조 및 제 31 조(총리령 제 1617 호, 2020. 5. 29.)</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 조(법률 제 16715 호, 2019. 12. 3.)</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 및 제 5 조(총리령 제 1619 호, 2020. 6. 4.)</p> <p>식품위생법 제 36 조 및 제 37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p> <p>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3 조 및 제 24 조(대통령령 제 30545 호, 2020. 3. 24.)</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 조(별표 14)(총리령 제 1610 호, 2020. 4. 13.)</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1 조, 제 22 조 및 제 24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22 조(대통령령 제 30545 호, 2020. 3. 24.)</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9 조(별표 10)(총리령 제 1611 호, 2020. 4. 16.)</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4 조 및 제 15 조(법률 제 16716 호, 2019. 12. 3.)</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대통령령 제 29763 호, 2019. 5. 14.)</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15 조(총리령 제 1618 호, 2020. 6. 3.)</p> <p>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법률 제 15942 호, 2018. 12. 11.)</p> <p>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총리령 제 1547 호, 2019. 6. 19.)</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제 6 조의 2(법률 제 16714 호, 2019. 12. 3.)</p> <p>화장품법 제 3 조(법률 제 17250 호, 2020. 4. 7.)</p> <p>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4 조(총리령 제 1627 호, 2020. 6. 30.)</p> <p>자동차관리법 제 53 조(법률 제 17235 호, 2020. 4. 7.)</p>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11 조(국토교통부령 제 744 호, 2020. 6. 26.)</p>
--	--	---

8	분야	:	의약품 소매 유통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의약품 소매 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약국을 설립해야 한다. 그 인은 1 개의 약국만 설립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조치	:	약사법 제 2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7208 호, 2020. 4. 7.) 약사법 시행령 제 22 조의 2(대통령령 제 30545 호, 2020. 3. 24.)

9	분야	: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및 부수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p>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 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p> <p>철도 운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인이 합작투자 계약 또는 운송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경우 그 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 소유 철도 시설(고속철도를 포함한다)을 정비 및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 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조치	: 철도사업법 제 5 조, 제 6 조 및 제 12 조(법률 제 16637 호, 2019. 11. 26.) 한국철도공사법 제 9 조(법률 제 15460 호, 2018. 3. 13.)

		<p>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p> <p>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 제 20 조, 제 26 조 및 제 38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p> <p>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 7 조(법률 제 16641 호, 2019. 11. 26.)</p>
--	--	--

10	분야	: 운송 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에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 서비스, 해운대리업 서비스와 선박 정비 및 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조치	: 해운법 제 24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6521 호, 2019. 8. 20.) 해운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19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해양수산부령 제 402 호, 2020. 4. 6.) 도선법 제 6 조(법률 제 17025 호, 2020. 2. 18.) 선박투자회사법 제 3 조 및 제 31 조(법률 제 16507 호, 2019. 8. 20.)

11	분야	: 운송 서비스 -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다음의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은 그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항공안전법 제 7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7463 호, 2020. 6. 9.) 항공사업법 제 7 조부터 제 10 조(법률 제 16642 호, 2019. 11. 2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8 조, 제 8 조의 2 및 제 12 조(국토

		교통부령 제 732 호, 2020. 5. 27.)
--	--	-----------------------------

12	분야	:	쿠리어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우편법 시행령」 제 3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한다.</p> <p>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p>
	조치	:	<p>항공사업법 제 52 조(법률 제 16642 호, 2019. 11. 2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52 조(국토교통부령 제 732 호, 2020. 5.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 조, 제 24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 조, 제 34 조 및 제 41 조의 2(국토교통부령 제 738 호, 2020. 6. 17)</p>

13	분야	: 통신 서비스
	정부 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는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KT 에 대하여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p>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법률 제13823호, 2016. 1. 27.)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이다.</p> <p>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법률 제13823호, 2016. 1. 27.)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는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그리고</p> <p>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3586호, 2015. 12. 22.)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조치	<p>: 전기통신사업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21 조 및 제 87 조(법률 제 13823 호, 2016. 1. 27.)</p> <p>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4 조(법률 제 5385 호, 1997. 8. 28.)</p> <p>전파법 제 13 조 및 제 20 조(법률 제 16756 호, 2019. 12. 10.)</p>

14	분야	: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p>
	조치	:	<p>공인중개사법 제 9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p> <p>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3 조(대통령령 제 30509 호, 2020. 3. 3.)</p> <p>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4 조(국토교통부령 제 689 호, 2020. 2. 21.)</p> <p>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21 조 및 제 29 조(법률 제 17219 호, 2020. 4. 7.)</p> <p>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 조, 제 21 조 및 제 25 조(대통령령 제 30428 호, 2020. 2. 18.)</p> <p>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8 조 및 제 20 조(국토교통부령 제 690 호, 2020. 2. 21.)</p>

15	분야	:	의료기기 관련 소매, 리스, 임대 및 수리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리스,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의료기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35 조 및 제 37 조(총리령 제 1617 호, 2020. 5. 29.)

16	분야	:	임대 서비스 - 자동차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자동차 임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7453호, 2020. 6.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716호, 2020. 4. 14.)

17	분야	:	과학조사 서비스 및 해도제작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p>
	조치	:	<p>해양과학조사법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법률 제 17057 호, 2020. 2. 18.)</p> <p>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5 조(법률 제 15429 호, 2018. 3. 13.)</p>

18	분야	: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목록 나의 법률 서비스-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조치	: 변호사법 제 4 조, 제 7 조, 제 21 조, 제 21 조의 2, 제 34 조, 제 45 조, 제 58 조의 6, 제 58 조의 22 및 제 109 조(법률 제 17366 호, 2020. 6. 9.) 법무사법 제 2 조, 제 3 조 및 제 14 조(법률 제 17366 호, 2020. 6. 9.) 공증인법 제 10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법률 제 15150 호, 2017. 12. 12.)

19	분야	: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조치	: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제 7 조, 제 12 조, 제 18 조 및 제 23 조(법률 제 17291 호, 2020. 5. 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제 9 조(법률 제 15514 호, 2018. 3. 20.)

20	분야	: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 (제 8.5 조) 현지주재 (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조치	: 세무사법 제 6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3 및 제 20 조(법률 제 17339 호, 2020. 6. 9.) 법인세법 제 60 조(법률 제 16833 호, 2019. 12. 31.) 소득세법 제 70 조(법률 제 16834 호, 2019. 12. 31.)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 20 조 및 제 22 조

21	분야	: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p> <p>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와 같은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p>
	조치	:	<p>산업안전보건법 제 17 조, 제 18 조, 제 21 조 및 제 145 조 (법률 제 17433 호, 2020. 6. 9.)</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7 조(대통령령 제 30509 호, 2020. 3. 3.)</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6 조 및 제 229 조(고용노동부령 제 272 호, 2019. 12. 26.)</p>

22	분야	: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치	: 건축사법 제 23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 건축사법 시행령 제 22 조 및 제 23 조(대통령령 제 30774 호, 2020. 6. 9.)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3 조(국토교통부령 제 739 호, 2020. 6.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법률 제 16652 호, 2019. 11. 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33 조(대통령령 제 29677 호, 2019. 4. 2.) 기술사법 제 6 조(법률 제 17347 호, 2020. 6.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8 조(법률 제

	<p>17453 호, 2020. 6. 9.)</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3 조 (대통령령 제 30876 호, 2020. 7. 28.)</p> <p>건설기술 진흥법 제 26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44 조(대통령령 제 30885 호, 2020. 7. 30.)</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21 조(국토교통부령 제 726 호, 2020. 5. 26.)</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법률 제 15200 호, 2017. 12. 12.)</p> <p>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 및 제 10 조(법률 제 17453 호, 2020. 6. 9.)</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 조(법률 제 30893 호, 2020. 8. 4.)</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 및 제 54 조(법률 제 16812 호, 2019. 12. 10.)</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30799 호, 2020. 6. 23.)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45 조, 제 46 조 및 제 47 조</p> <p>온천법 제 7 조(법률 제 14795 호, 2017. 4. 18.)</p>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법률 제 17378 호, 2020. 6. 9.)</p>
--	---

23	분야	: 사업 서비스 - 전광판방송 서비스 및 옥외광고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 (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 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방송법 제 13 조 및 제 73 조(법률 제 16750 호, 2019. 12.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및 제 44 조(대통령령 제 30645 호, 2020. 4. 28.)

24	분야	: 사업 서비스 - 직업알선 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 서비스 및 선원교육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근로자 공급 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20년 1월 16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운영자, 「선원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해양 및 수산업 관련 단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 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조치	: 직업안정법 제 19 조 및 제 33 조(법률 제 17326 호, 2020. 5. 26.)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33 조(대통령령 제

	<p>29950 호, 2019. 7. 2.)</p> <p>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8 조 및 제 36 조(고용노동부령 제 263 호, 2019. 10. 15.)</p> <p>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부터 제 10 조(법률 제 17326 호, 2020. 5. 26.)</p> <p>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및 제 3 조(대통령령 제 30256 호, 2019. 12. 24.)</p> <p>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조 및 제 5 조(고용노동부령 제 272 호, 2019. 12. 26.)</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법률 제 16416 호, 2019. 4. 30.)</p> <p>선원법 제 109 조, 제 110 조, 제 112 조, 제 115 조, 제 116 조, 제 117 조, 제 142 조 및 제 143 조(법률 제 17032 호, 2020. 2. 18.)</p> <p>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 5 조(법률 제 13272 호, 2015. 3. 27.)</p>
--	---

25	분야	: 조사 및 경비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조치	: 경비업법 제 3 조 및 제 4 조(법률 제 16316 호, 2019. 4. 16.) 경비업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4 조(대통령령 제 30384 호, 2020. 2. 4.)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3 조(행정안전부령 제 112 호, 2019. 4. 23.)

26	분야	:	간행물 관련 유통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조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18 조, 제 19 조 및 제 19 조의 3(법률 제 16693 호, 2019. 12.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2 조(대통령령 제 29950 호, 2019. 7.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 7 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97 호, 2020. 6. 23.)

27	분야	: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³
	조치	:	항공사업법 제 42 조 및 제 44 조(법률 제 16642 호, 2019. 11. 2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41 조 및 제 43 조(국토교통부령 제 732 호, 2020. 5. 27.) 항공안전법 제 97 조(법률 제 17463 호, 2020. 6. 9.)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내 사무소 설립은 다른 당사자 영역에서 한국 항공기에 대한 정비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다.

28	분야	: 교육 서비스 - 고등 교육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최소 50 퍼센트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최소 50 퍼센트를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일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 교육기관(목록 나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학, 약학, 수의학, 전통 한방 의학, 의학 기술 및 유아·초등·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 교육분야의 연간 학생 정원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 교육기관의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

	<p>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p> <p>기술 대학 및 사내 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p> <p>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된다.</p> <p>국내외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p>
조치	<p>: 고등교육법 제 3 조, 제 4 조, 제 21 조, 제 23 조, 제 32 조, 제 42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6742 호, 2019. 12. 10.)</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5 조 및 제 28 조(대통령령 제 30725 호, 2020. 6. 2.)</p> <p>사립학교법 제 3 조, 제 5 조, 제 10 조 및 제 21 조(법률 제 16679 호, 2019. 12. 3.)</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 조의 3(대통령령 제 30514 호, 2020. 3. 10.)</p> <p>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 1 조 및 제 2 조(대통령령 제 30550 호, 2020. 3. 31.)</p> <p>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8 조(법률 제 16810 호, 2019. 12. 10.)</p> <p>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3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조(대통령령 제 30545 호, 2020. 3. 24.)</p>

29	분야	: 교육 서비스 - 성인 교육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이 한국에 설립할 수 있는 성인 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으로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 교육 관련 학원(성인 대상 민간 교육 기관),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평생 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그리고 2) 지식 및 인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이며,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학원(성인 대상 민간 교육기관)은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 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시설의 설립, 확장 및 이전은 제한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교육감은 비차별적으로 학원 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다.

조치	<p>: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조의 2 및 제 13 조(법률 제 15967 호, 2018. 12. 18.)</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대통령령 제 30547 호, 2020. 3. 31.)</p> <p>평생교육법 제 30 조 및 제 33 조부터 제 38 조까지(법률 제 16677 호, 2019. 12. 3.)</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6859 호, 2019. 12. 31.)</p> <p>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37 호, 2018. 7. 6.)</p> <p>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8 조(법률 제 16810 호, 2019. 12. 10.)</p> <p>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10 조부터 제 14 조까지(대통령령 제 30545 호, 2020. 3. 24.)</p>
----	---

30	분야	: 교육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 (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8 조, 제 32 조 및 제 36 조(법률 제 17326 호, 2020. 5. 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4 조 및 제 26 조(대통령령 제 30850 호, 2020. 7. 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14 조 및 제 18 조(고용노동부령 제 288 호, 2020. 7. 14.)

31	분야	: 환경 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 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현지주재 (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조치	: 물환경보전법 제 62 조(법률 제 17326 호, 2020. 5.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 조(법률 제 17183 호, 2020. 3. 31.)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7(법률 제 16613 호, 2019. 11. 26.) 지하수법 제 29 조의 2(법률 제 17326 호, 2020. 5. 26.) 대기환경보전법 제 68 조(법률 제 16604 호, 2019. 11. 26.) 환경영향평가법 제 54 조(법률 제 16617 호, 2019. 11. 26.) 화학물질관리법 제 28 조(법률 제 17326 호, 2020. 5. 26.)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법률 제 16614 호,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8 조(대통령령 제 30684 호, 2020. 5. 19.)

32	분야	:	공연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조치	:	<p>공연법 제 6 조 및 제 7 조(법률 제 16588 호, 2019. 11. 26.)</p> <p>공연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6 조(대통령령 제 29950 호, 2019. 7. 2.)</p> <p>공연법 시행규칙 제 4 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71 호, 2019. 10. 7.)</p> <p>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 963 호, 2019. 12. 24.)</p>

33	분야	: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에 의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의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 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의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 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는 기사 취재의 목적으로만 한국에 지사 또

	<p>는 지국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p> <p>다음의 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p> <p>가. 외국 국민</p> <p>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p> <p>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조치</p>	<p>: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5, 제 16 조 및 제 28 조(법률 제 16052 호, 2018. 12. 24.)</p> <p>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및 제 10 조(대통령령 제 30059 호, 2019. 8. 27.)</p> <p>전파법 제 20 조(법률 제 16756 호, 2019. 12. 10.)</p>

34	분야	:	생물학적 제제 제조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투자</u>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인은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 혈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조치	:	약사법 제 42 조(법률 제 17208 호, 2020. 4.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 조(총리령 제 1576 호, 2019. 12. 6.)

35	분야	: 유통 서비스 - 농축산업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에 가축 시장을 설립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4 조(내국민 대우) 및 제 8.5 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조치	: 양곡관리법 제 12 조(법률 제 16891 호, 2020. 1. 29.) 축산법 제 30 조 및 제 34 조(법률 제 17099 호, 2020. 3. 24.) 종자산업법 제 42 조(법률 제 16789 호, 2019. 12. 10.) 사료관리법 제 6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 인삼산업법 제 20 조(법률 제 16101 호, 2018. 12.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6859 호, 2019. 12.

		<p>31.)</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30586 호, 2020. 3. 31.)</p> <p>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37 호, 2018. 7. 6.)</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7 조 및 제 43 조(법률 제 17091 호, 2020. 3. 24.)</p> <p>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9-92 호, 2019. 12. 31.)</p>
--	--	--

36	분야	: 에너지 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⁴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 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조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7219 호, 2020.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7 조(대통령령 제 30525 호, 2020. 3.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6859 호, 2019. 12.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30586 호, 2020. 3. 31.)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⁴ 목록 나의 12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p>2018-137 호, 2018. 7. 6.)</p> <p>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17 호, 2000. 9. 28.)</p> <p>금융투자업규정 제 6-2 조(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8 호, 2019. 3. 20.)</p>
--	--	--

37	분야	: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정부수준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⁵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조치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법률 제 17131 호, 2020. 3.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7219 호, 2020. 4.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6859 호, 2019. 12. 3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 11 조(2019. 7. 3.)

⁵ 목록 나의 12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제2항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2항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11조(현지주재)와 제8.4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11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 조치는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기존의 조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투자</u>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목록 가 및 목록 나에서의 한국의 약속을 저해함이 없이,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방위사업법

4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는 중요 기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5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거나 인정되었어야 하는 것 외의 산업에서의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중앙상품분류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모든 서비스는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어야 한다. 한국은 이 협정 발효일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산업에서의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6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또는 제 9 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규정에 따른, 이민,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포함한 자연인의 그 밖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7	분야	: 토지취득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유보내용	<p data-bbox="639 439 1418 678">: <u>투자</u></p> <p data-bbox="639 752 1418 824">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된다.</p> <ol data-bbox="639 860 1418 1458"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9 860 1418 93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li data-bbox="639 967 1418 1126">2.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에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19 1162 1418 1198">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li data-bbox="719 1234 1418 1328">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li data-bbox="719 1364 1418 1458">다. 관련 법에 규정된 토지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p data-bbox="639 1494 1418 1588">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8	분야	: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9	분야	: 취약집단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10	분야	: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11	분야	: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공익 사업, 대중 교통, 공공주택, 보건 및 보육</p>
	기존의 조치	:	-

12	분야	: 모든 분야(금융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한국은 GATS 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 16 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GATS 에 따른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p> <p>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목록가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 요소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p> <p>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목록가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 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p> <p>다. 부록 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p>

		<p>GATS상의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록 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p> <p>이러한 변경은 GATS 상의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시장접근열에 기재된 GATS 제 16 조제 2 항바호에 관련한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GATS 상의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시장접근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의하여 수정된대로의 제 8.11 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p>기존의 조치</p>	<p>: -</p>

13	분야	:	모든 분야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⁶</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p> <p>라. 철도운송, 또는</p> <p>마. 통신</p>
	기존의 조치	:	-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 에 따라 부여되는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14	분야	: 환경 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위의 서비스의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 -

15	분야	: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16	분야	: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목록 가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 10.6 조(이행요건 금지)제 1 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 -

17	분야	: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목록 가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 -

18	분야	:	유통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 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류, 곡분, 인삼,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 서비스
	기존의 조치	:	-

19	분야	: 운송 서비스 - 도로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화물 도로운송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연안운송은 포함하지 않는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20	분야	: 운송 서비스 - 내륙 수상 운송 서비스 및 우주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내륙수상 운송 서비스 및 우주 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21	분야	: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22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p data-bbox="639 443 906 477">: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 data-bbox="639 533 1410 734">한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하는 차량 총수 결정과 우체국에의 차량 배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639 790 1410 880">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편지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639 936 1410 1025">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p>
	기존의 조치	<p data-bbox="639 1115 730 1149">: 우편법</p> <p data-bbox="639 1193 895 1227">공용차량 관리 규정</p> <p data-bbox="639 1261 887 1294">외국인투자 촉진법</p>

23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방송 서비스에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24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모든 종류의 전송망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 양방향 방송과 오버더톱 콘텐츠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25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6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7	분야	: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28	분야	: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업 구조조정 파트너십,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29	분야	: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서비스나 목록 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 콘텐츠산업 진흥법

30	분야	:	사업서비스 -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1	분야	: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농축산물의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2	분야	: 사업 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3	분야	:	어업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유보내용	:	<u>투자</u>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4	분야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의 출판(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분야	: 교육 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보건 및 의료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보건 및 의료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 외의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는 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6	분야	:	사회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 ⁷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특히 의약품조제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37	분야	: 시청각 서비스 - 영화 진흥, 상영,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영화의 진흥, 상영,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8	분야	: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농어촌 지역 관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39	분야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 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정의된 “사행성게임물” 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 관광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	--	--	----------------------------------

40	분야	: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조사, 감정, 매매 또는 관리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이 유보항목이 목록 가의 공연 서비스 및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유보항목들과 불합치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한다.
	기존의 조치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1	분야	: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파트너십·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유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당사자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가.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적 문서의 준비

나. 공정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다.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그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라.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들에 관한 행위

투명성의 목적상,

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 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나.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

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5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각 당사자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각 당사자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비당사자의 법무회사(로펌)의 합작회사를 포함하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각 당사자의 법무회사(로펌)란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각 당사자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외국 변호사는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제 중재 사건에서 일시적 법률사무와 대리가 허용된다. 다만 연간 체류기간

		<p>이 90일 미만이어야 한다.</p> <p>국제중재사건이란 한국을 중재지로 하고 한국 외 국가의 법령, 한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한국 외 국가들 간의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 중재 사건을 말한다.</p> <p>나.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된다.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p>
기존의 조치	:	-

42	분야	: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공인회계사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외국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정보 교환
	기존의 조치	: -

43	분야	: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세무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치	: -

44	분야	:	수의료 서비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수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45	분야	:	그 밖의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노무 자문 서비스, 변리사 서비스 및 통관 서비스를 포함한 그 밖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46	분야	: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기존의 조치	:	

47	분야	: 운송 서비스 - 해상 여객 운송 및 연안해상 운송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 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 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된다. 연안해상 운송은 한반도 전체 및 모든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의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 10.15 조(안보 예외)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기존의 조치	:	-

48	분야	: 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한국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및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을 제외한 항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49	분야	:	주류 제조
	관련의무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투자</u> 한국은 주류 제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50	분야	:	금융 서비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한국은 부록 나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관련의무에 대하여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부록 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c. 학제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p>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 에서 “ 제한 없음 (None)” 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 에서 “ 제한 없음 (None)” 으로 수정
포장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 에서 “ 제한 없음 (None)” 으로 수정
<p>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p> <p>a.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 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 제공 서비스는 제외함.</p> <p>b. 여행 대행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에 대하여 “약속 안함 (Unbound)*” ,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 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p>

<p>c.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됨”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p> <p>D. 기타</p> <p>- 게임 서비스(CPC 964**)</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부록 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한국

주해

1. 이 부록상의 모든 약속은 GATS 제6조 및 GATS 금융 서비스 부속서 제2항에 합치하는 진입 요건, 국내법, 규정, 규칙, 지침,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의 그 밖의 모든 모든 관련 규제 당국의 조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된다. 따라서 하위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의 약속의 순서와 다르다.
3. 하위분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은 기존의 국내 금융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4. 모든 금융 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 나.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서 정의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따라 규제되는 다른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 다.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될 수 없다. 상업적 주체의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다.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하다.
- 라.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한다. 본점의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마. 요구불예금 금리는 규제된다.
- 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운용은 제한된다.
- 사.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 아.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u>직접 보험</u>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간 서비스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보험 중개 및 대리 서비스 - 보험 중개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 보험 대리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보험 부수 서비스: 다음의 하위분야에만 적용됨. - 손해사정 서비스 ⁸ - 보험계리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약속안함 (3) 외국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만 상업적 주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
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간 서비스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제외)			
a) 예금 ⁹ b) 대출 ¹⁰ c) 금융 리스 d) 지급 및 송금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 퍼센트까지(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4 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⁹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¹⁰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의 15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¹¹.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 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 퍼센트 중 큰 금액임.

¹¹ “인” 및 “비금융 서비스 기관”은 「은행법」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공급형태

1) 국경간 서비스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e) 보증 및 약정</p> <p>f) 외환 서비스¹²</p> <p>g) 결제 및 청산¹³</p>	<p>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p> <p>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p> <p>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p> <p>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p>		

¹²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행위

¹³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행위

	<p>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을 초과함.</p> <p>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p> <p>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p> <p>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p> <p>금융 리스, 신용 공여 및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	--	--	--

공급형태

1) 국경간 서비스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h)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아래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 - 외환 -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 -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 - 양도성 증권 -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괴 포함) 	<p>(1) 약속안함</p> <p>(2) 약속안함</p> <p>(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금융기관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1) 약속안함</p> <p>(2) 약속안함</p> <p>(3) 제한 없음</p>	
<p>i)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발행 	<p>(1) 약속안함</p> <p>(2) 약속안함</p>	<p>(1) 약속안함</p> <p>(2) 약속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인수 - 증권모집 -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p>(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3) 제한 없음</p>	
--	---	------------------	--

공급형태

1) 국경간 서비스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j) 자산관리,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함.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 보관 - 신탁(투자일임업 포함) ¹⁴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 및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은 약속안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¹⁴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k) 신용정보 서비스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기존 금융정보회사에 대한 50 퍼센트 미만의 지분 참여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l)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함. - 투자 자문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외국 투자자문회사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 신용평가 및 분석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	(1) 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제한 없음	

	<p>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 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 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해야 함.</p>	
--	--	--